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엄셋별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번호 | 2736 |
|------|------|

발의일자 : 2025. 5. 29.

발 의 자 : 엄셋별 의원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관내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 및 효율성과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통해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안전한 대중교통 활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다. 구민의 권리와 의무(안 제4조)
- 라. 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안 제5조)
- 마. 대중교통 안전 및 육성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 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예산조치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5. 5. 30. ~ 2025. 6. 5.

서울특별시 금천구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대중교통의 효율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2. “대중교통수단”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
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의 체계적 구축·운영 지원
2. 구민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3.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
4. 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강화
5.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 제공
6.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
7. 구민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8.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 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서울특별시 금천

구(이하 “금천구”라 한다)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구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 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 안전)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 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지원) 구청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중교통수단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
2.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3. 전기버스·수소전기버스 등 친환경 대중교통수단 보급

4.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
5.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
6.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8조(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금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신청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7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3.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5.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6. 오지·도서 및 벽지 등의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8. 그 밖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대중교통운영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